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7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정성호·김영진·김정호

박희승 • 윤후덕 • 이강일

이연희 · 임광현 · 정태호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업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복지의 근본 취지와 상충하고 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반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대

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제1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의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u><신 설></u>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6호의 주택
	<u>을 말한다)</u>
<u>1</u> . (생 략)	<u>2</u> . (현행 제1호와 같음)
<u>2</u> . <u>제1호의</u> 주택외에 종업원의	<u>3</u> . <u>제1호 및 제2호의</u>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
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
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